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2024. 3. 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16. 권영숙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4. 2. 20.

다. 상정일자: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2. 29.)

상정, 심사, 보류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3.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권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3조)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안 제4조~제7조)

4)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의 방제(안 제8조~제10조)

5) 가로수의 보호 및 점검,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안 제11조~제13조)

6)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원인자부담금, 가로수 관리대장

(안 제14조~제16조)

다. 주요내용

1) 관계법령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기타

가) 입법예고 : 2024. 2. 16 ~ 2024. 2. 22. (의견 없음)

나)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없음.

3. 심사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 및 보도상에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도시 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중 오염 감소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 수종선정 기준, 식재의 위치·기준·시기와 바뀌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의 방제 등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조치 및 점검, 주민참여, 관리 대장의 작성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음.
- 무엇보다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

상회복명령에 의한 비용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는 위임사항을 포함한 자치입법 활동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임.
- 특히, 안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은 단체위임사무인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숲 조성 사업의 가로수 및 부대시설의 훼손시 원상회복명령과 더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부적합할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이는 주민에게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공법상의 원칙¹⁾을 준수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 계 법 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